

인천시청역 한신더휴 |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안내 |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개정 2020. 10. 27.>
 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	처리기간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계약자명	주인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000000-0000000
	주소(법인소재지)	인감증명서 or 본인사실확인서에 등록된 주소	(휴대)전화번호 010-1234-5678
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예금(적금)기재 원	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대금 기재 원
	④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할 금액 원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 현금, 펀드, 보험 등 금융상품 및 이에 준하는 자금 (②, ③, ④, ⑥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) 원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		[] 보유 현금
	[] 그 밖의 관계()		[] 그 밖의 자산(종류: 미래소득, 보험 등)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소유의 부동산 매도액, 기존 임대보증금,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원		⑦ 소계 ②+③+④+⑤+⑥ 원
① 자금 조달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	주택담보대출 작성금지 원
	신용대출		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자금 원
	그 밖의 대출		중도금대출 40%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대출)
	우측 대출 합계 원		
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	작성금지
차입금 등	⑨ 임대보증금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입주 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	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(상환금액 등이 약정된 자금) 원
	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원		⑫ 소계 ⑨+⑩+⑪ 원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		
	[] 그 밖의 관계()		
⑬ 합계	⑦+⑩ 합계 (계약하는 분양금액 + 발코니확장비 + 플러스옵션금액 합계 금액과 동일해야 함)		원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⑬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 원
	⑮ 계좌이체 금액		⑬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 원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	원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원
지급 사유 ()			
⑱ 입주 계획	우측 해당부분 체크 및 작성 (필수기재) 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 작성금지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작성금지 년 월 일

제출인

계약자명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청약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청역 한신더휴 | 미제출 사유서 |

자소서 기재항목		증빙자료	제출여부	미제출사유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잔액증명서	0	제출완료
		기타		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거래내역서	0	제출완료
		예금잔액증명서		
		기타		
	증여·상속	증여·상속세 신고서	X	00년 00월 증여예정
		납세증명서		
		기타		
	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소득금액증명원		제출완료
	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0	
		기타		
	부동산 처분대금 등	부동산 매매계약서		제출완료
부동산 임대차계약서		0		
기타				
차입금	금융기관 대출액	금융거래확인서		'22년 12월 중도금대출신청 예정
		부채증명서		
		금융기관 대출신청서 (중도금대출 외 기타 대출 등)	X	
		기타		
	임대보증금	부동산 임대차계약서		해당없음
	회사지원금·사채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		해당없음
	그 밖의 차입금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	X	00년 00월 차입예정

※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0/X 표시

※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 '미제출 사유란'에 "해당없음"으로 작성

※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(예시 : 증여, 매매계약,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"00월 예정"으로 작성)

※ 증빙자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제출완료

인천시청역 한신더휴 |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항목 세부 내용 |

■ 관련 규정

- 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(2020.10.27. 시행)에 따라 규제지역(투기과열·조정대상)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- 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(2020.10.27. 시행)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

■ 자금조달계획서 각 항목 세부 내용

항목	상세항목	세부내용	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	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
	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	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
이에 준하는 자금		부동산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등	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그 밖의 대출	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V 체크, 보유란에 V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물로 산정하여 기재)
	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회사지원금·사채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	
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
자금지급 방식	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
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청약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